사업방법서 별지

(송금안심보험)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(기타) / 기타

2. 보험의 목적에 관한 사항
   가. 착오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“비용손해”

3. 보험기간에 관한 사항
 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4. 보험료납입에 관한 사항
  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다.

5.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
   가.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6. 기타 필요한 사항
   가.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 나. "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" 적용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 - 다수구매자(피보험자)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보장내용으로 상품을 설계하여야 한다.
   (불완전판매 우려가 적고 보험사고 입증 및 보험금 지급절차가 단순한 보장.
   예:상해사망)
   - 보험료는 계약자(상품판매자)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   (보험료 부담이 피보험자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인수)
   -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주요 보장내용을 설명하고 피보험자 확인을 받은 경우 인수한다.
   (가입 전 설명·확인, 사전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후 설명·확인)
   다. "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" 운영에 관한 사항
   - 적용근거 :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.
   - 적용범위 :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   1)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
2)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「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
- 기타

1)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
2)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

라. 감영병 면책 특별약관 (LMA5399)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로 구성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.

마. "단체계약 특별약관"이 부가된 계약에 한해서만 판매한다.